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373
------------	------

2025. 02. 25.
주택공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02. 03. 옥재은 의원 발의
2. 회부일자: 2025. 02. 06.
3. 상정 및 의결일자
 - 제328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(2025. 02. 25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 (옥재은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세계스마트시티기구(WeGO)의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과 서울시가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지원범위에 ‘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’ 및 ‘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을 추가

2. 주요내용

- 가.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 사항에 ‘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’ 및 ‘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을 추가하여 지원범위 명확화(안 제17조제1항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윤은정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(이하 “WeGO”)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항에 ‘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’ 등을 추가하여 사업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) ① 시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[(WeGO), 이하 “기구”라 한다]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.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</p> <p><신 설> <신 설>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</u></p> <p>4. <u>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- “WeGO”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자정부·스마트시티 분야의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식 공유·전파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서울시에서 창립된¹⁾ 국제기구이며, 2014년부터는 서울시로부터 국제부담금 명목으로 사무국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왔음²⁾.

1)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로써, 2010년 서울시에서 “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” (World e-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)로 공식 창립하여 2017년 러시아 올라놉스크 주에서 열린 제4차 WeGO 총회에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로 개명하였음.
2)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했음.

〈 최근 5년간 서울시의 WeGO 예산편성액 〉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 통계목	2021	2022	2023	2024	2025
국제부담금	651	651	1,721	1,893	1,873

- WeGO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국제부담금으로 사무국 운영비(인건비, 사무관리비, 업무추진비 등)와 사업비³⁾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, 그 결과를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고 있음⁴⁾.

〈 2024년 / 2025년 WeGO 예산편성 현황 〉

(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붙임2. 참조)

(단위: 천원)

구 분	세 부 내 역	2024년(A)	2025년(B)	증감액 (B-A)
총예산		1,893,493	1,873,419	△20,074
인건비	직원급여, 4 대보험, 퇴직급여 총당금(6명)	377,313	385,237	7,924
사무관리비	임차료 및 관리비, 사무실 운영경비	247,600	219,602	△27,998
업무추진비	사업수행 및 조직운영 업무추진	13,500	13,500	-
사업비	WeGO 거버넌스 행사추진	161,000	61,000	-
	WeGO 회원도시 디지털 역량 강화	72,000	72,000	-
	회원도시 스마트시티 콘텐츠 개발 및 공유	1,012,080	1,012,080	-
연회비	도시별 인구대비 책정 연회비	10,000	10,000	-

- 실제 국제부담금 내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, 그간 사업비를 ‘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’로 보아왔으나,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.

3) ‘스마트시티 글로벌 인덱스 개발’, ‘서울 스마트도시상 운영’ 등

4) 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지구 지원)

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이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,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또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」 5)상에도 각기구의 운영비뿐 아니라 공동협력사업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범위에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WeGO의 지원사항에 ‘공동협력사업’(검토보고서 붙임3)과 ‘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을 추가하려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됨.
- 참고로, 서울시는 세계대도시협의회6), 시티넷7) 등 총 29개의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으며(검토보고서 붙임4), 이 중 서울시가 행·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구는 8개임(검토보고서 붙임5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5) 「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6조(국제기구 유치 지원범위 등)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·외 홍보
2.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
3.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·재정적 지원

4.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

5.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6) 세계 대도시들이 경제, 환경, 삶의 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국제기구로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하였음.

7) 아시아*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인간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, 비정부기구, 기업 등이 모여 결성한 국제기구로 1987년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(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, UNESCAP), 유엔인간정주계획(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, UN-HABITAT), 유엔개발계획(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, UNDP)의 합작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요코하마에 사무국이 설립되었으며, 2013년 서울 사무국으로 이전하여 현재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
4. 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[(WeGO), 이하 “기구”라 한다]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</u></p> <p>4. <u>그 밖에 기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